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2019. 9. 2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19-105

나.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19년 9월 9일(월)

라. 회부일자: 2019년 9월 10일(화)

2. 제안사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치분권분야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나. 구성기관: 40개 기초자치단체(2019. 9. 현재)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강동구, 마포구 (12)
(부산) 연제구 (1)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3)
(광주) 서구, 광산구, 남구 (3)
(대전) 서구, 유성구 (2)
(경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김포시, 오산시, 구리시, 여주시, 양평군 (13)
(충남) 아산시, 논산시 (2), **(전북)** 완주군, 진안군 (2), **(전남)** 여수시, 영암군 (2)

다. 기　능(제2조)

1)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구성 및 임원(제3조~제5조)

1) 구　　성: 지방자치단체 〔별표〕
2) 임　　원: 회장 1명, 부회장, 사무총장
3) 임원임기: 임기 중 1년, 1회 연임

마. 회의 및 의결(제6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실무협의회(제10조)

1) 기　　능: 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수행
2) 구　　성: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국·과장 참여

사. 경비부담(제12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2조

나. 예산조치: 2020년 본예산에 연회비 1,000만원 편성

5. 검토의견

○ 동 규약 동의안은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지방자치법」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검토의견

-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약 30년이 되었지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권한 없는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시도가 꾸준히 있었고,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동 규약 동의안은 자치분권의 촉진과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가 참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의회의 설립취지나 법적 근거를 살펴 보건대 가입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다만,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존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다른 자치단체협의회와 설립 목적이나 추진사업 등에서 중복되거나 대동소이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가 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구성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현재 가입 회원 수는 40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 11월 12일 설립 이후 가입률이 16.4%로 저조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의 대표성 확보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 아울러 협의회가 실질적 영향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와 향후 협의회 회의에서의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동 규약 동의안 제12조(경비부담)를 보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부담이 수반되는 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여로 인해 우리 구의 발전에 미칠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